의안 번호 652

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정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08. 11. 11(화)

○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○ 위원회회부 : 2008. 11. 13(목)

O 위원회심사 : 2008. 12. 1(월)

### 2. 제안이유

○ 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4조4호 및 제37조에 따라 우리구 환경보 전 시책의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·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○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조부터 제3조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·기본이념·기본원칙·용어 정의 등 조례 전체의 원칙적·총괄적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)
- 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구·사업자·구민, 언론·민간단 체 등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함(안 제5조부터 안 제8조)

- 법 제14조의4호에 따라 중구 환경보전계획, 자연환경의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)
- 환경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, 자원의 순환적 이용 추진, 환경보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)
- 환경오염 원인자 비용부담, 환경오염 행위자 규제조치, 원인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활동 등을 명시함(안 제16조, 제17조, 제18조)
- 정보공개, 신고포상금 지급, 교육 및 홍보 등 정보공개와 구민참 여 보장 등을 규정함(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)
-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등을 규정함(안 제25조부터 안 제33조)

## 4. 근거법규

○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호 및 제37조

#### 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 9. 22 ~ 10. 13)

#### 6. 검토의견

○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 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함은 물론

- 우리구와 사업자 및 구민이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·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갈수 있도록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
- 이 조례안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되나 <u>다만, 제15조의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·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, 제28조의 위원장의 직무 제2항에 "부회장"을 "부위원장"으로 수정해야 될것으로 보아짐.</u>

# 관계법령발췌

## 환경정책기본법 [일부개정 2008.3.28 법률 제9037호]

제14조의4 (시·군·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·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당해 시·군·구의 환경보전계획(이하 "시·군·구환경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·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 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수립된 시·군·구환경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 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게 시·군·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2.12.30]

第37條 (環境保全諮問委員會) ①環境保全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改正

1997.12.13, 2002.12.30>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, 시·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2.12.30>